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3.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12호로 2021년 2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출연금 및 산출내역

- 출연금액 : 2억원

4.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보증한도가 증가하여 담보력이 약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출연에 대한 보증대상, 보증조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검토결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특별신용보증 출연금 확보를 통하여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출연이므로 동의안 의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시·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

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등)
 4.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